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5. 1. 14(금)
관광건설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4년 12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2005. 1. 13)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종 운)

가. 제안이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기술적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 자문단의 기능(안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 구성(안 제3조)

-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자문단 회의(안 제6조)
-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 개최

○ 수당 등 지급(안 제13조)
- 자문단회의,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 일 수)

○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 소방방채청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통보함에 따라 (2004. 9. 16)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시 기술적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붙임서류 :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 · 관리조례안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자문 및 점검
6. 기타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안전관리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안전관리분야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도지사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자문단은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자문단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자문단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문단회의에는 도지사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①도지사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제시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자문) 자문단은 도지사가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8.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1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